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3년 9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시민들이 알기 쉽고 명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규정」에 맞추어 일부 규정 및 필요조항을 추가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 대두
- 따라서 국민제안규정에 맞는 용어 및 규정을 정리하고, 다소 부정확한 규정을 분명히 함으로써 시민제안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민제안제도로 볼 수 없는 사항 중 인천광역시 소관 업무사항이 아닌 사항을 추가 (안 제6조)
- 나. 자유제안의 제출방법 중 방문 및 팩스 등을 이용하는 방법을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7조제1항)

다.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는 제안에 참여한 자 별로 각각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 (안 제7조제3항)

라. 시민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 신설 (안 제8조)

마. 시민제안의 내용은 시민 및 인천광역시산하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운영실적 및 실시결과 등을 공개하는 규정 신설 (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7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의회의장 (참조 : 시의회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13, 팩스 032-440-87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 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주 소 : ○성 명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정제안”을 “공모제안”으로 한다.

제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인천광역시 소관 업무가 아닌 사항

제7조제1항 중 “직접 또는 우편, 인터넷”을 “방문·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각의 “지정제안”을 “공모제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3조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채택제안의 결정)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이 시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부터 제14조까지를 제9조부터 제15조로 한다.

제15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안정보의 공동 활용) 시장은 시민제안의 내용을 시민 및 인천광역시와 산하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민제안제도의 운영실적 및 실시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생략) 2. <u>지정제안</u> :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안의 범위와 절차를 시보 등에 게재하는 제안	제2조(제안의 종류) ----- -----. 1. (현행과 같음) 2. <u>공모제안</u> ----- ----- -----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1. ~ 4. (생략) <u><신설></u>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인천광역시 소관 업무가 아닌 사항</u>
제7조(제출) ① 자유제안은 제안자가 수시로 제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현행,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여 <u>직접 또는 우편, 인터넷</u> 등을 이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② <u>지정제안</u> 은 시장이 <u>지정제안</u> 의 대상과 제출방법 등을 정하	제7조(제출) ① ----- ----- ----- ----- <u>방문 · 우편 · 팩스</u> <u>또는 인터넷</u> ----- -----. ② <u>공모제안</u> ----- <u>공모제안</u> -----

여 지방지·시보 등에 게재하는
바에 의한다.

<신 설>

<신 설>

제8조 (생 략)

제9조 (생 략)

제10조 (생 략)

제11조 (생 략)

제12조 (생 략)

제13조 (생 략)

제14조 (생 략)

제15조 (생 략)

<신 설>

-----.

③ 제3조에 따라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안에 참여한 자 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채택제안의 결정) 시장이 시민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현행 제8조와 같음)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2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4조 (현행 제13조와 같음)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6조(제안정보의 공동 활용) 시

<신 설>

장은 시민제안의 내용을 시민
및 인천광역시와 산하 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민제안제도
의 운영실적 및 실시결과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관련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련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

관련법령 발제사항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국민제안의 처리)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에 관한 국민제안을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제안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제안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1.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공모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

에 제출하는 국민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접수한 국민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5. "중앙우수제안"이란 안전행정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예산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사안 없음

2. 미첨부 근거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하여
비용추계서 미첨부

4. 작 성 자

- 문화복지위원회 박승희의원